

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01

제출일자 : '95.

제출자 : 제천시장

○ 제안이유

제천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중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는 업체에 기업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하여 건전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주요골자

1. 자금조성은 제천시와 (주)충북은행이 각각 40:60 비율로 출연하여 제천시는 8억원, (주)충북은행은 12억원을 '96년부터 '98년까지 연차별로 조성하며,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관리.
2. 제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업체당 1억원이내, 이율은 일반대출금리보다 3%내외로 낮게 융자하고, 상환기간은 1년이내 (이자차액은 시비에서 보전)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연장.
3. 시장이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여 융자심의위원회에서 당해기업에 대한 신용정도, 자산상태, 운영실태등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심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
4.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안건을 사전심의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33조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 별첨

1. 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1부.
2. 기타 참고자료(근거법령) 1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제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관리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기타의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상환금등
-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할 수 있다.

- ②시장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한다.
③금융기관은 조성된 기금의 범위내에서 시장의 요청에 의거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직접 융자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3.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2 장 중소기업운전자금의 관리 . 운용

제6조 (융자대상 업체) 운전자금의 융자대상업체는 제천시 관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유망 중소기업체
2. 지역특화산품 생산업체
3. 공업단지 입주업체
4.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6.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7조 (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도 초에 융자금 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융자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 신청서 (별지서식)
2. 공장등록증 사본
3. 중소기업 입증자료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또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제9조 (융자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신용정도, 자산상태, 운영실태등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 (융자조건) ① 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1억원 이내로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3 %내외로 낮게 정한다.

③ 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차보

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의한 이차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 ⑤ 응자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인정할 수 있다.
- ⑥ 응자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추가융자) 금융기관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시장과 합의하에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 (융자금의 상환) ① 응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 ② 제10조제5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상 시중은행의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 ③ 시장은 응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응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응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응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응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5. 응자받은 업체가 제천시 관할을 벗어나 업체소재지를 이전할 때

제 3 장 보 칙

제13조 (변경사항 통보) 응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자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사후관리) 시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응자금의 관리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보고등) ① 금융기관은 응자상환,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해서 담당과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하고, 담당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제천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앞면)

융자신청서

○ 입체명 :

○ 소재지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응자신청액 :

원

○ 업체현황 :

업종		공장규모	대지 건물	평 등	평
생산 주생산품 :		중업원	생산직 :		명
년간생산액 : 백만원			사무직 :		명
자본 자기자본 : 백만원		수출	계 :		명
타인자본 : 백만원			년간		천불
공장등록	년 월 일 (부분) 등록	주사무소 (본점)		담당공무원 인	

○ 사업계획 :

사업 기간				
세부사업별 소요 자금				
소요 자금	자기자금	백만원	사체	백만원
조달 방법	융자	백만원	기타	백만원
융자금 상환 방법				

신청인이 응자신청하였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면)

○ 운전자금 심사자료

① 사업영위기간 (등록년월일)		② 입지 (). . . .) 형태		1. () 공업(농공)단지 2. 개별입지	
③ 유명 중소기업 유망 신기술기업		지정기관 지정년월일		④ 계 매출액 수출 내수	
⑤ 자기자본비율		총자본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⑥ 산업재산권, (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권등)		종류	등록번호	등록일	
⑦ 규격표시, 품질 인증 등 (ES 표시허가, 품질관리등급 품질인증마크)		규격표시명	허가(승인)번호	승인기관	승인일자
⑧ 포상 (업체 및 대표자)		포상명	분야	수여기관명	
⑨ 종업원수		명 (소득세징수액 접계표상 인원으로 한다)			
⑩ 가점 사항	폐자원재활용 자원재생업종		환경오염 방지업종		창업보육센터 출업기업
<p>※ 위 자료는 운전자금 응자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합니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시는 운전자금 심사대상 에서 제외됩니다.</p>					
상기 운전자금 심사자료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199					
신청자 : (인)					
추천기관 확인자 : (인)					
제천시장 규하					